

2018.05.14

## '환전영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내

### 1. 개요

핀테크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인환전 · O2O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개정 사유

내외국인 환전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핀테크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환전업 제도는 영업장에서의 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핀테크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환전 분야에서 핀테크 기반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환전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외국환거래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사항

#### 가. 무인환전기환전영업자 제도 구체화

◆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영업을 신규 업종으로 도입하고 업무범위, 업무방식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인적사항 확인) 무인환전이 가능하도록 신분증을 스캔하여 인식하는 비대면 방식의 인적사항 확인을 인정
- (거래금액) 비대면 인적사항 확인에 따른 신분증 도용 등의 우려를 고려해 동일자, 동일인 기준 1천불 이하 거래\*만 허용

\* 금융실명법상 100만원 이하 환전은 실명확인 의무 면제

2018.05.14

## '환전영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내

### 3. 주요 사항

- (고객지원센터 운영) 무인환전기기 고장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의무화

#### 나. 온라인환전영업자 제도 구체화

- ◆ 온라인환전영업을 신규 업종으로 도입하고 업무범위, 업무방식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영업장 외 지급) 대면 영업장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고객에게 환전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인적사항 확인) 고객에게 환전대금 지급시 대면하여 확인\* 하도록 규정
- \* 단, 온라인에서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 준하는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환전대금 지급시 확인의무를 완화
- (거래금액) 대면거래를 전제로 한 각종 의무\*가 면제되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2천불 이하 거래 허용
- \* 각종 신청서 접수, 증명서 확인 및 발급 등
- (소비자 보호) 전자적 거래를 수반하므로 약관 명시, 손해배상절차 마련, 결제대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금 예탁(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의무 부과

#### 다. 시행일

- ◆ 2018년 5월 1일

2018.05.14

문의사항 권선아 관세사 T/ 054-471-2083 메일/ sakwon @esein.co.kr

**[파주세관산하 도라산센터] [속초세관산하 고성센터]  
남북관계 훈풍으로 다시 주목**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으로 인해, 관세청 도라산센터와 고성센터가 곧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센터는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통관 물량이 확 줄자 점차 인원이 줄어 현재 2명까지 인원이 축소됐다. 설립 초기 22명이 근무했던 도라산센터 역시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2명만이 남아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입주기업 업종별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TF를 발족했다. 조사 결과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중 응답한 101곳의 96%가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동안 중단된 금강산 관광도 대북 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현대그룹 주도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력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도라산과 고성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언제든지 보강할 수 있다"며 "파주세관(도라산센터)과 속초세관(고성센터)의 전체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참조기사 : 조세일보 『남북관계 훈풍...잊혀졌던 도라산·고성세관센터 '주목』